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환경기술, 환경산업 등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정부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통해 환경산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II. 검토의견

1. 환경산업의 육성(안 제6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등에 녹색전환계정을 설치하고, 녹색전환보증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하며 그 밖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¹⁾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의 목적 및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출연에 관한 근거와 계정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문을 정비한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④ <u>녹색전환보증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하며 그 밖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④ <u>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u> ⑤ <u>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안 제6조의3)

안 제6조의3에서는 정부가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에게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제1호),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제2호),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제4호),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도(제5호) 등 환경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u>3.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u> 4.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5.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u>
--	--

3. 환경표지 등의 인증 취소(안 제23조제1항제2호)

안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²⁾는 환경표지 인증을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로서 그 제품에는 기기, 자재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환경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 이상의 위반행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법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제3호³⁾를 참고하여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3조(환경표지 등의 인증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표지 등의 인증 취소) ①----- ----- ----- ----- ----- -----.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u>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 ----- <u>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u> ----- -----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4.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 외에 다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안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와 안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환경표지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공개제도가 신설되므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례를 각각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한편, 안 제22조의2에서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4),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파. (생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⁵⁾에 따라 업무규정을 통해 개정안과 동일하게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받은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부칙)	수정의견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부의 출연금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u>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u>
<신 설>	<u>제3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u>
<신 설>	<u>제4조(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u>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으로 한다.</u>
--

(전문위원 이 화 실)